

교직원해외연수 규정

문서번호	BSKS-3-1-37
제정일자	2011.12.30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3

2011.12.30.제정 2019.07.16.제정 2022.04.15.개정 소관부서 : 사무처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(이하 "본교"라고 한다.) 교직원들의 선진대학 벤치마킹, 해외문화 체험을 통하여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한 교 직원해외연수를 실시하는데 있어 제반사항을 규정 하는데 목적이 있다.
- 제2조(자격) 본교에 재직 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.
 - 1. 교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해외연수 실시 당해연도 3월 1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
 - 2. 직원은 본교 일반직으로 재직기간이 5년 이상(해외연수 실시 당해연도 기준)인 자<개 정 2019.07.16.>
 - 3. 본교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직원 해외연수(해외어학연수 포함)를 2회 미만 참가한 자
 - 4. 해외연수 실시 당해연도 8월 및 익년도 2월에 정년·명예퇴직 예정인 교직원(이하 "퇴직예정자"라고 한다.)
 - 5. 위 호에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제3조의 선발기준에 해당하는 자
- 제3조(선발인원 및 기준) 본 해외연수에 참가할 교직원에 대한 선발인원 및 기준은 본교의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정한다.<개정 2019.07.16.>
 - 1. <삭제 2019.07.16.>
 - 2. <삭제 2019.07.16.>
 - 3. <삭제 2019.07.16.>
 - 4. <삭제 2019.07.16.>
- 제4조(퇴직예정자의 일괄시행) 퇴직예정자의 해외연수는 퇴직예정 3년 이내의 교직원을 별도로 구성하여 일괄 시행할 수 있다.
- 제5조(선발 시기) <삭제 2019.07.16.>
- 제6조(연수 기간) 본교의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정한다.<개정 2019.07.16.>
- 제7조(연수 경비) 참가하는 교직원 본인의 연수 경비는 일체 본교에서 부담하며 가족을 동반 할 경우 동반되는 가족에 대한 연수 경비는 교직원 본인이 부담한다.



교직원해외연수 규정

문서번호	BSKS-3-1-37
제정일자	2011.12.30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3

제8조(주관 부서) 본 연수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는 사무처에서 주관한다.

제9조(연수 관련 업무 위탁) 본 연수의 계획·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 에 대해서는 여행사에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

교직원해외연수 규정

문서번호	BSKS-3-1-37
제정일자	2011.12.30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3/3

[별지 제1호 서식]<개정 2019.07.16.>

20 학년도 교직원 해외연수 대상자 명단 및 참가신청서

I. 연수기간:

Ⅱ. 대상인원 : 5명(교원 4명, 직원 1명)

Ⅲ. 연수장소:

≪해외연수 신청서 작성 ≫ - 연수 대상자 개인별로 표기하여 월 까지 사무처로 제출

연수 대상	자	참가 여부 (○)		부부동반 유무 (○)		비고
소 속	성 명	참가	불참	동반	혼자	

※ 부부동반하실 경우 배우자에 대한 추가여행경비는 본인부담

상기와 같이 해외연수를 신청합니다.

201 . . .

신 청 자 : ____(인)

부산경상대학교 총장 귀하